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전화(02)734-8796 / FAX 723-1966

문서번호 국무심평 16060- 109

시행일자 1998. 6. 2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취 급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보 존			
조정관	- 4	김현우	이철우
심의관	김	기획심의관	김
과 장	회동기획		
기 안	김 성 환		협조

제 목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지침 시달(국무총리 지시 제-16 호)
¹⁹⁹⁸

신정부 출범이후 일부 공직자들이 국난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수행에 앞장서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정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국정전반의 총체적 개혁에 앞장섬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책임성과 생산성 있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강확립대책 추진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지침 1부.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11~19, 31~47, 51~66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전화(02)734-8796 / FAX 723-1966

문서번호 국무심평 16060-109

시행일자 1998. 6. 24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번호			결재	
	처리과		·	
	담당자		공람	

제 목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지침 시달(국무총리 지시 제 1998-16호)

신정부 출범이후 일부 공직자들이 국난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수행에 앞장서기보다는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정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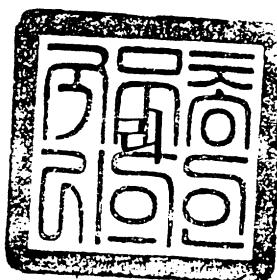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국정전반의 총체적 개혁에 앞장섬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책임성과 생산성 있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수신처 : 가 11~19, 31~47, 51~66



國家紀綱 確立對策 推進指針

1998. 6

國 務 調 整 室

1. 배경

- 과거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식 개혁,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치유책 보다는 일과성·충격성 사정활동에 치우친 결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무사안일과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 신정부 출범이후 일부 공직자들이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앞장서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등 국정과제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 「국민의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가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 부정부패의 근절, 민생치안질서 확립 등 사회구조조정 차원의 총체적 개혁과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할 필요

2. 국가기강 확립 대책

— < 기본 방향 > —

선진 민주사회 건설과 경제난국의 조기극복을 위해

- 법과 질서의 체질화를 통한 새로운 준법풍토 확립
- 공직기강 쇄신을 통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
-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왜곡된 사회풍토 개조
- 건전한 경제기반 조성으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지원

(1)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합동점검 및 자체 감찰활동 강화
 - 복지부동·무사안일·불평불만·냉소주의 등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4대 악을 추방하고, 춘지수수·호화유홍업소 출입·향응·접대골프 등 공무원의 지탄받는 행위 철저히 단속
 - 국무조정실에서 8월 말까지 공직기강 점검활동 집중 실시
 - 각 부·처·청도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문제 공무원을 문책 조치
- 공직사회에 Incentive System과 실적평가제 적극 도입
 - 공무원의 실적평가를 위한 “점수제”, “목표관리제” 도입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 보수제”, 포상 등 Incentive 제도 적극 시행
 -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평정 관행을 능력과 실적위주로 대폭 개선
 - 기관평가제 실시를 통해 각 부처 업무추진실태 점검
- 각 부처 감사관실의 기능강화 및 우수인력 배치
 - 감사관 이하 담당공무원을 강한 개혁의지를 갖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높은 최우수 공무원으로 보임
 - 비위 적발위주의 감사관실 기능을 소속 직원에 대한 성실성·창의성 등 업무수행자세 평가기능까지 확대
 - 적극적·창의적 직무수행상의 잘못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하고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야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책
-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국가기강 확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관부처간 관련정보의 교환, 합동점검 실시 등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의 활동과 관련하여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급 기관은 적극 협조
 - 부처간 협의안된 정책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보도되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부처간에 충분하게 협의

(2) 부정부패 척결

- 일과성·충격성이 아닌 지속적 사정 실시
 - 부정부패 범죄를 '국가존립 저해범죄'로 규정하고 엄벌 조치
 -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정치인·관료의 부정한 청탁·압력 등 각종 이권개입행위 및 지방토착비리 철저히 근절
- 사정기관 자체비리에 대한 철저한 정화·사정
 - 사정기관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정화 및 사정활동을 전개
 - 사건처리관련 금품수수·사건알선료 수수 등 법조비리, 경찰·세무서·세관의 피조사자·대상업소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집중 단속
- 부정부패 요인이 되는 규제 및 제도 개혁
 - zero base에서 현행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실명제', '규제 정기심사제' 도입으로 규제생산자의 책임을 강화
 - 인·허가등 민원처리절차의 획기적 개선 및 담당공무원의 순환 보직, 신속한 행정을 위한 위임전결의 대폭확대
 - 행정절차의 투명화,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혁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연대책임 및 직무상 고발제도 철저이행
 - 비위공직자의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및 동일부서 직원들의 인사교체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305호)」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발생시 수사기관에 철저히 고발 조치

(3) 사회·경제질서 확립

-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기초질서 확립
 - 생활·거리·교통·환경 등 4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계몽과 대대적인 단속활동 전개
 - 민생침해범죄 철저 단속
-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활동 강화
 - 사용자의 불법해고·임금체불과 노동자의 불법파업·시위에 엄정 대처
- 경제회생 저해행위 강력 제재
 -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재산도피 철저 규명
 - 호화사치, 음성·불로소득자, 목적 불분명한 해외출국빈번자, 해외 도박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미성년 퇴폐·탈선 부유층 자제의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 분식결산 등 기업의 투명성 저해행위,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방해행위,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압력행위, 주식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경제회생 저해행위에 엄정 대처
 -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한 세금추징외에 형사고발 적극 확대
 - 소액밀수 방지 차원에서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대폭 강화
 -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형사고발 조치

(4) 제도개선 추진

- 부정부패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 함양과 고발자 보호를 위해 가칭 「국민고발촉진 및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추진(법무부)
※ 국민회의 제출('96. 11. 11)법안 현재 국회 계류 중
- 부정부패의 은밀화 및 뇌물범죄 사장 방지차원에서 뇌물공여업체 특별관리에 관한 국세청 훈령 개정 검토(국세청)
- 뇌물공여사범에 대해 뇌물수수보다 경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행 처리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뇌물공여 원천봉쇄차원 대책 수립(법무부, 검찰청)
- 금융거래사실 여부조차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확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수립(재경부, 법무부, 검찰청)
-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사실 보안대책 수립(법무부, 검찰청)
 - 압수수색영장 집행전 보안유지책 강구
- 뇌물수수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금지급 제한강화방안 법적 검토(행정자치부)

3. 부처별 추진사항

추진부처	추 진 사 항	비 고
전부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단속대상 기강문란 사례에 대한 자체감찰 활동을 8월 말까지 집중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점검※ 중점 단속대상 기강문란 사례<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수수 · 인사청탁 · 직권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 등 비리 · 직권남용- 복지부동 · 무사안일 · 불평불만 · 냉소주의 등 직무태만- 향응 · 퇴폐행위 · 접대골프 등 공직자 품위손상○ 감사담당 공무원을 최우수 공무원으로 보임○ 감사관실 기능을 업무수행자세 평가기능까지 확대○ 적극적 · 창의적 직무수행상의 잘못은 관용조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언론보도 전 관계부처간 협의 철저○ 부정부패 요인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혁○ 행정절차의 투명화,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혁○ 비위공직자에 대한 연대책임 및 직무상 고발 제도 철저 이행○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기초질서 확립○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활동 강화	
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의 불법해고 · 임금체불과 노동자의 불법 파업 · 시위 엄정 대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정기관 자체비리 철저한 정화	

추진부처	추 진 사 항	비 고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실명제, 공무원 Incentive System의 신속도입 및 효율적 운영 ○ 인허가 등 민원처리절차의 획기적 개선 및 담당공무원의 정기적 순환보직 ○ 위임전결의 대폭확대로 신속행정 구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무감찰 강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정보활동을 통한 일상적인 사정활동 체제 구축 ○ 정경유착의 근절로 정치인 부패, 관치금융 혁파 ○ 지방 토착비리 척결 ○ 부실기업의 회사자금 횡령, 재산 해외도피 엄단 ○ 부정부패를 국가존립저해 범죄로 규정하여 온정적 처리지향 ○ 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및 투명성 저해, 기업부실화 책임자 등 경제회생 저해사범 엄단 ○ 국민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노사의 불법 해고·파업 엄정 대처 ○ 국민의 편안한 생활확보를 위한 민생사정 강력 추진 ○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 및 생활·거리·교통·환경질서 확립 	

추진부처	추 진 사 항	비 고
국세청 ·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재산 해외도피 규명, 고발○ 호화사치, 음성 불로소득자, 목적 불분명한 빈번한 해외출국자, 해외도박행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 퇴폐 · 탈선 부유층 자제의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분식결산 등 기업 투명성 저해행위 규명, 고발○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적극적 고발○ 세관의 휴대품검사 강화	
공정위 · 금감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 강화○ 은행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해사범 적극 고발○ 공정한 신용질서 및 금융거래관행 확립대책 수립○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청탁 · 압력행사자 파악 보고	

4. 행정사항

(1) 「국가기강 확립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양식:별첨 1) 6. 30(화)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

※ 6. 19 「국가기강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별도의 과제를 부여받은 기관들은 해당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6. 26(금)까지 제출

(2)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 보고

-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7, 8, 9 월의 경우는 익월 5일까지, 이후에는 분기별로 분기 말 익월 5일 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양식 : 별첨 2)

(3) 「자체감찰활동」 추진실적 보고

- 각 기관은 자체 감찰활동 추진실적을 7. 25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양식:별첨3)

(4) 취약분야 선정 · 제출

- 각 부처별로 취약분야를 5대분야 이상 선정하여 분야별로 부조리 유형과 양태를 적시, 6. 30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양식 : 별첨 4)

(5) 타부처의 협조가 부진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업무내용 조사

- 이미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타 부처의 협조가 부진하여 추진이 되고 있는 업무를 파악, 6. 30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양식:별첨 5)

(6) 감사담당 공무원 교체결과 보고

- 각 부처청의 장은 감사관 이하 담당공무원을 사명감과 책임감이 높은 최우수 공무원으로 보임하고, 그 결과를 7. 25까지 국무조정실에 보고(양식 : 별첨 6)

(7) 제도개선사항 검토결과 제출

- “2-(4), 제도개선추진” 해당부처는 검토결과를 8. 15까지 청와대에 보고하되, 1부를 국무조정실에 동시에 제출

(8) 각 부처청의 장은 3급이상 공무원, 산하단체 임원의 승진·전보시 대통령 비서실의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고, 인사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를 감찰활동 추진실적 보고시 포함 보고

< 별첨 1 >

「국가기강 확립대책」 세부 추진계획

(○ ○ 부)

과 제 명	세부추진계획	비 고
<input type="checkbox"/>		
○		

※ 6하원칙에 의거, 요점을 명확하게 기재

< 별첨 2 >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

(○ ○ 부)

과 제 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 고

※ 추진실적은 기 완료실적, 진행중, 향후계획을 분명히 구분하여 6하원칙에 의거, 요점을 명확하게 기재

< 별첨 3 >

자체감찰 추진 실적

(○ ○ 부)

종합

(단위 : 건)

구분	계	금품수수	인사청탁	직권남용	복지부동 무사안일	향응 등 품위손상	기타
적발건수							
조치	조치중						
결과	조치 완료						

※ 조치완료 내용은 징계내용을 구분 명시

건별 적발내용

○ 금품수수 (※ 비위유형별로 동일)

연번	인적사항	적발내용	조치결과

※ 6하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작성

< 별첨 4 >

취약분야 및 부조리 유형

(○ ○ 부)

취약분야	부조리 유형 및 양태	비고

< 별첨 5 >

업무협조 부진 사항

(○ ○ 부)

사업 내용	추진 상황	협조 미비내용	비고
※ 사업내용은 관계부처간 합의된 내용을 명시		○ - - - (○○부) ※ 팔호안에 협조부진 내용과 관련부처를 명시	

< 별첨 6 >

감사담당공무원 인사내용

(○ ○ 부)

□ 직원현황

- 총 : ○ 명
 - 직급별 : 국장 ○, 과장 ○, 서기관 ○, 6급이하 ○
- 인사교체 현황 : ○ 명(직급별 내역)

□ 인사내용

총 전			신 임			비 고
직 위	직 급	성 명	직 위	직 급	성 명	
						* 교체하지 않은 직원 까지도 모두 기재

□ 감사관 및 감사담당관 인적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주 요 경 력